

-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BORYEONG

- ◆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예산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I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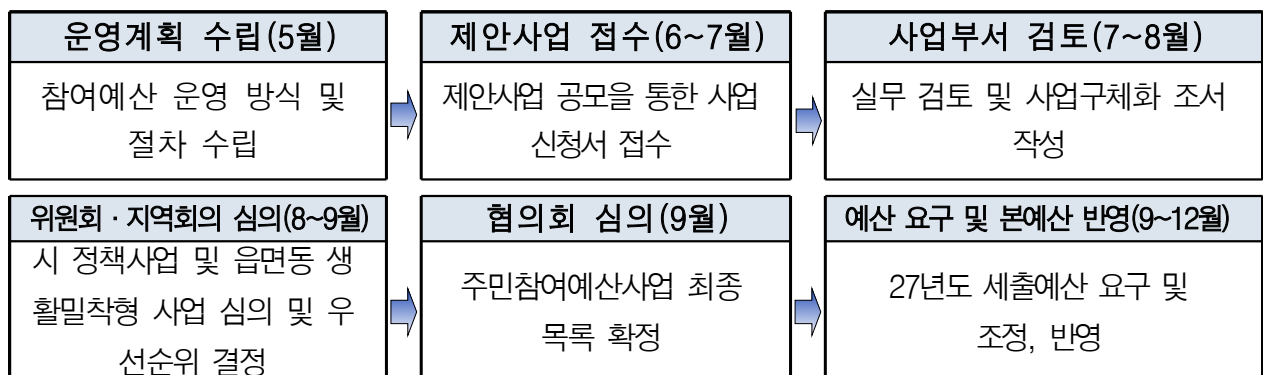
1)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2) 운영 방향

- 『주민e참여』(온라인플랫폼) 도입을 통해 주민 접근성 제고 및 주민참여예산 제안·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 ※ 주민e참여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으로 '23. 9. 신규 오픈, 공모·신청·접수·결과 확인 및 전자투표 가능
- 주민참여예산 교육 방식 다양화(온라인 교육 도입) 및 지역 주민 제안서 신청 과정에 컨설팅 기회 제공하여 제안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3) 주요 운영 절차



II

2025년 운영 결과

1) 운영 개요

- 예산규모: 31억 원(시 정책사업 15억 원, 읍면동 생활밀착형사업 16억 원)
- 공모기간: '25. 5. 19.(월) ~ 7. 4.(금) / 47일간
- 추진경과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실시: '25. 5. 19. ~ 7. 4.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 대상 워크숍 추진(기간 중 17회): '25. 6. 4. ~ 7. 4.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 정책사업 심의 대상 확정: '25. 8. 26.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심의 및 재심의: '25. 9. ~ 10.
- 제안사업 심의 현황

구 분	최초 접수	담당부서 검토(1차)	위원회 및 지역회의 심의(2차)	협의회 심의(3차)	비 고
시 정책사업	40건	15건 (13.1억원)	14건 (13.3억)	14건 (13.3억)	
읍면동 생활 밀착형 사업	77건	77건 (16억 원)	76건 (15.8억 원)	77건 (16억 원)	부적격 사업 서면심의 후 타사업으로 대체 반영

2) 운영 성과

- 최초 접수 건수 대비 반영 비율 증가(24년: 17%, 25년: 38%)
→ 주민 의사 반영률 증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사업대상지 현장 방문을 통한 제안 사업 이해도 증진 → 사업 심의 시 평가 정확도 확보 가능

3) 운영 개선 계획

○ 주민참여예산 사업 변경 시 협의회 심의 필수

- 예산편성 이후 무분별한 사업 변경을 방지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사업 추진 중 사업의 일부 변경 및 미추진 사유 발생 시 관련 내용 공문 제출 후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심의 승인을 거쳐야 함.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변경에 한하며 사업대상지, 사업 내용, 사업비 증액 불가능(집행 잔액 목적 외 사용 불가)

○ 채택된 제안 사업에 대한 이후 과정 확인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e참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시스템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주민e참여 시스템을 통해 제안사업 신청자(5명)에 한하여 추천을 통해 지역상품권(1만원) 제공

○ 주민참여예산제 유공 포상(10명)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에 대한 활동 독려 및 운영 성과에 따른 보상

Ⅲ 2026년 세부 운영 계획

1)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

○ 기 간: 2026. 4. ~ 6.

○ 관련규정: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

○ 대 상: 보령시 주민 및 시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인 원: 시 위원회(50명) / 읍면동 지역회의(읍면동별 30명 이내)

○ 주요활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및 심의

2)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예산규모: 31억 원(시 정책사업 15억 원, 읍면동 생활밀착형사업 16억 원)
- 공모기간: 2026. 6. 4.(목) ~ 7. 15.(수) / 42일간
- 제안대상: (시 정책) 보령시민 누구나 / (생활밀착형) 각 읍·면·동 주민
- 제안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량, 소요사업비, 사업내용 등
- 제안방법: 주민e참여/보령시청 누리집, 기관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구 분	시 정책 사업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대상사업	시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예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 , 시민 안전, 문화·관광 개선 사업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지역 주민 발전을 위한 사업 예시) 마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및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 등
사업규모	15억원(사업별 최대 3억원)	16억원(읍면동별 1억원)
사업범위	보령시 전체	각 읍·면·동

< 제외 대상(부적정) 사업 >

※ 2026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의 부적정 사업 내용 참고(붙임 문서)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계속 진행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토지 보상 문제, 각종 규제 등으로 단년도 추진 곤란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읍면동 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사업
-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 국·도비 사업, 국가·도 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사업
- 생산성 없거나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 소모성 재료비 및 장비 등의 구입이 목적인 사업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워크숍 등)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 마을길 포장, 용배수로 설치, 관정 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 민원이 존재하거나 의회 또는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제외된 사업
 -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업
-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 등 유지보수성 사업

3) 주민참여예산 워크숍(교육) 실시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워크숍	○ 대상: 보령시 주민참여예산 위원(49명) ○ 기간: 2026. 6. 4. ~ 7. 15.(기간 중 3회) ○ 장소: 미정 ※ 대관 상황에 따라 유동적 운영 ○ 운영방법: 전문업체 위탁 운영 -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분과별 발표 및 제안서 작성 ○ 교육내용: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사업 발굴, 검토 요령 안내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 워크숍 (읍·면·동)	○ 대상: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및 각 읍면동 주민 ○ 기간: 2026. 6. 4. ~ 7. 15.(읍면동별 1회씩) ○ 장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운영방법: 전문업체 위탁하여 읍면동별 순회 교육 ○ 교육내용: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및 제안서 컨설팅

4) 주민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시 기: 2026. 7. ~ 8.
- 검토자: 제안사업 소관부서 담당자
- 검토사항
 -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및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 사업규모 및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한 사업 구체화
- ※ 실무 검토의견서 및 사업 구체화 조서 제출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제안사업 심의

- 시 기: 2026. 8. ~ 9.
- 검토 대상 및 주체
 - 시 정책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각 읍·면·동 지역회의

6)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최종심의(본심의)

- 시 기: 2026. 9.
- 내 용: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사업목록 확정

7) 2027년 본예산 예산 요구 및 조정

- 시 기: 2026. 9. ~ 10.
- 주 체: 실과 사업 부서 및 각 읍·면·동

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공개 및 의회 제출

- 시 기: 2026. 11. ~ 12.
- 내 용
 -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IV 행정 사항

1)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홍보

- 기 간: 2026. 6. ~ 7.
- 홍보계획
 - 온라인: 시 누리집 및 유튜브, SNS 등
 - 오프라인: 아파트 미디어보드, 현수막 게첨 및 포스터 배부 등
-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홍보, 제안서 접수 안내 등

2)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 보상

- 시 기: 2026. 11. ~ 12.
- 대 상: 시 정책사업 중 추진 가능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제안자
 -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최종 확정 목록에 있는 사업
- 방 법: 2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3) 부서 및 읍·면·동 협조 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실 · 과	▪ 제안사업 신청서 보완 지원 ▪ 제안사항에 대한 실무검토(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및 구체화조서 작성 ▪ 본예산 요구 및 선정 사업 추진 ※ 주민e참여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e호조에서 제안사업 구체화관리 및 최종 선정 사업에 대한 관리사업 등록 필요
읍·면·동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운영 홍보 ▪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시 정책사업 제안서 이송 (→ 새마을자치팀) ▪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제안서 보완 지원 ▪ 제안사업 신청서 실무검토(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구체화조서 작성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사업은 검토·심의 과정에서 제외 필수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지원 ▪ 선정사업 추진(본예산 요구 등)

- 붙임 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고문(안) 1부.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1부.
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실무 검토의견서 1부.
4.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사업구체화조서 1부.
5.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서 1부.
6. [참고사항] '26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적격/부적격 사업 1부. 끝.

-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보령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안)

2027년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27년 예산편성을 위한 보령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6. 6. 4.

보 령 시 장

1 공모 개요

1) 공모기간: 2026. 6. 4.(목) ~ 7. 15.(수) / 42일간

2) 공모 분야, 규모 및 접수 대상

분 야	규 모	내 용	대 상
계	31억 원		
시 정 책 사 업	15억 원 ※ 제안 한도액: 3억 원	• 시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고,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 시민 안전 보장, 문화·관광 개선 사업,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감 사업 등	보령시민 누구나 (보령 소재 학교, 회사 재학, 재직자 가능)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 업	16억 원 (읍면동별 1억 원)	• 사업 파급효과가 읍·면·동에 한정되는 사업 • 지역 현안 사안 해소 및 지역 주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예시) 마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 등	해당 읍·면·동 주민

※ 단, 보령시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 공기업 종사자 제외

< 제외 대상(부적정) 사업 >

※ 2026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에 근거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계속 진행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토지 보상 문제, 각종 규제 등으로 단년도 추진 곤란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읍면동 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사업
-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 국·도비 사업, 국가·도 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사업
- 생산성 없거나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 소모성 재료비 및 장비 등의 구입이 목적인 사업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워크숍 등)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 마을길 포장, 용배수로 설치, 관정 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 민원이 존재하거나 의회 또는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제외된 사업
 -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업
-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 등 유지보수성 사업

2 접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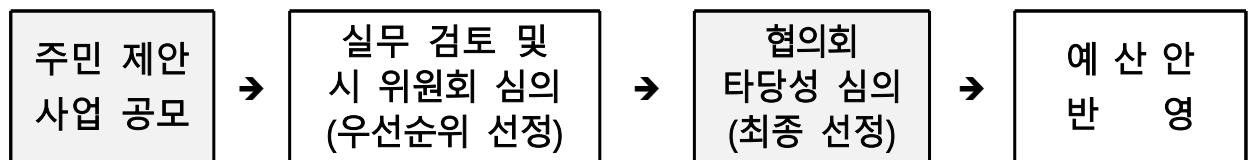
1) 접수방법

구 분	방 법	비 고
시 정 책 사 업	• 보령시 주민e참여 홈페이지 (https://pb.lofin365.go.kr/BORYEONG/main) ※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모기간 내 시 정책사업을 신청한 참가자 중 5명 선정, 공모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상품(보령사랑상품권 1만원) 지급 예정	 <주민e참여 홈페이지 접속 QR 코드>
	• 보령시 누리집(https://www.brcn.go.kr/kor.do) (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제안방)	
	• 이 메 일: holymoly66@korea.kr	
	• 우편/방문: 성주산로 77, 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자치팀 ※ 읍면동에서도 접수 가능(읍면동 → 새마을자치팀 아송)	
읍 면 동 생활밀착형 사 업	• 보령시 누리집(https://www.brcn.go.kr/kor.do) (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제-제안방) • 읍면동 방문, 우편 접수	

- 공모기간(2026. 6. 4. ~ 7. 15.) 중 관공서 운영시간 내에만 접수 가능
 - 단, 방문 접수의 경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이메일 · 우편 접수 시 접수 확인 필요
 - 마감일(2026. 7. 15. 18:00)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의 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누락 발생 시 추가 접수 불가
- 2) 제출서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1부
 - 작성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 ※ 사업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공란으로 제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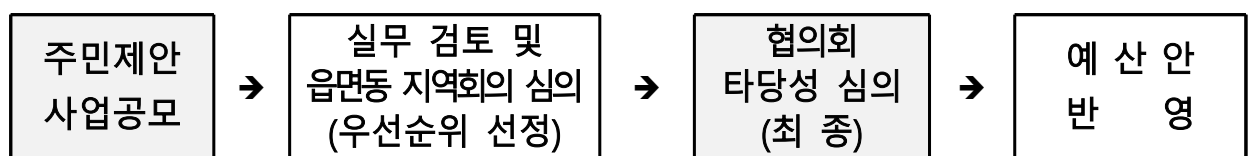
③ 운영 절차

1) 시 정책사업



※ 우선순위 선정 방법: 온라인 시민 투표(40%) + 시 위원회 투표 결과(60%) 합산

2)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④ 기타 사항

- 제안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주민e참여 홈페이지 및 보령시 누리집에 공개 예정(12월 중)
- 협의회 최종 선정 사업 중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 불가 사업 발생할 수 있음

5 문 의 처

○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자치팀(☎041-930-2311)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구 분	연 락 처	구 분	연 락 처
웅 천 읍	930-4512	주 산 면	930-4772
주 포 면	930-4551	미 산 면	930-4803
주 교 면	930-4583	성 주 면	930-4846
오 천 면	930-4614	대 천 1 동	930-4860
천 북 면	930-4659	대 천 2 동	930-4884
청 소 면	930-4683	대 천 3 동	930-4921
청 라 면	930-4711	대 천 4 동	930-4951
남 포 면	930-4741	대 천 5 동	930-4985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 신청인

성명	※ 단체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생년월일	
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 (핸드폰)	

< 개인정보 취급 동의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참여예산 업무 추진	제안사업 완료 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표시)

동 의

미동의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응모 불가

◇ 제안사업

※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닐 수 있음(제안자≠사업시행자)

유형	☐ 시 정책사업 ☐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읍면동명:)		
사업명			
소요사업비	천 원 ※ 소요사업비 산정 불가할 경우 공란 가능		
사업기간	2027. . . ~ 2027. . .		
사업위치	상세주소(도로명 또는 지번):		
사업목적 (제안사유)	— —		

현 황 사 진

※ 사업유형에 따라 첨부 가능할 경우에만 제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실무 검토의견서

◇ 제안개요		
신 청 인	성 명	
유 형	☐ 시 정책사업 ☐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사 업 명		
소 요 예 산	천 원	
사 업 기 간	2027. . . ~ 2027. . .	
사 업 위 치		
사 업 량		
◇ 사업부서 실무검토 [가능/불가능] 여부 반드시 표기		
※ 사업추진 불가의 경우에도 항목별 실무검토 및 추진불가 사유 기재 후 제출		
사업실행 가능성	토지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제반 문제성 여부 검토	
사업내용 공공성	특정단체(개인) 수혜사업 여부, 제안 사유·목적 합리성 여부 검토	
사업내용 적정성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성격 여부 검토	
소요예산 적정성	공란시 소요사업비 산출, 사업완료에 따른 소요(산출) 경비 적정 여부 검토	
투자자원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 발전소 및 폐광기금 등 특정자원 사업과 중복여부 검토	
종 합 의 견		
시 행 부 서	□□□실·과 ○○팀 담당자 ◇◇◇ (행0000)	
2026년 월 일 □□□실·과장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사업 구체화 조서

사 업 명	
유 형	☐ 시 정책사업 ☐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목적 · 필요성	
소 요 예 산	천원 ※ 필요시 재산정하여 보완 가능
사 업 기 간	2027. . . ~ 2027. . .
사 업 위 치	
사 업 량	
산 출 근 거	
시 행 부 서	□□□과 ○○○팀
기 대 효 과	
〈위치도〉	〈사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천 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소요사업비	비고
총계	()건		()	
1				
2				
3				
4				
5				
6				
7				
8				
⋮				

2026년 월 일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 ○○○ (서명)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과 부적정 사업(예시)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	부적정 사업(예시)
1.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 유사·중복되거나 기추진 중인 사업 ▶ 연례적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 ▶ 사업비 증액요구 사업 ▶ 당해년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예시 : 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 기 시행중인 계속사업 ▶ 자자체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예시 : 도시계획도로 개설, CCTV설치 사업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자체사업비에 의해 추진되는 투자사업	▶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시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 읍면동 기준경비로 편성되는 사업 ▶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지정경비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단순생활 민원성의 사업(단순 생활민원사업은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별도 관리 추진) ▶ 경비부담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당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예 :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3.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주민참여의 가치를 공유 또는 제고 : 주민생활 밀착 또는 읍면동풀뿌리소규모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선거법 위반 여지가 높은 사업 ▶ 일반 민원성 제안, 또는 반대여론이 높은 사업 ▶ 재난, 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
4. 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소모성·행사성 사업지양 : 1회성 공연, 축제, 행사 등 ▶ 소모성 재료비 및 장비 등의 구입이 목적인 사업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예 : 총사업비 20억원 초과사업) ▶ 소규모 기반시설 등 설치·유지보수 사업 ▶ 행정관청 설립 및 각종시설물에 대한 단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예 :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도서관 등) ▶ 소규모 분산투자로 투자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업(예 : 동일구간 예산의 분리편성 사업 등)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	부적정 사업(예시)
5. 선행절차 이행완료 및 별도 제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선행절차 : 법 개정, 각종 영향평가, 투자심사, 재정계획 등 ▶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되는 경비나 사업(단, 의회에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 조례, 공공청사 설치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나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 ▶ 별도의 심의제도(개별위원회 등)가 있거나 의회 또는 각종위원회 심의시 폐기된 사업 ▶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6. 지역전역에 파급효과가 있거나 다수 지역주민이 수혜가 가능한 사업 또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제안하는 사업	▶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방향이나 사업 ▶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일부지역에 경비지출 효과가 귀속되는 수혜성 사업 ▶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성 사업 ▶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토지보상으로 특정인 수혜를 의도하는 사업